

- '22. 01. 15. 경기도에 1차 공무원 제안  
- 「특수조건」 세부 운영 내 계약상대자의 권리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제안
- '22. 02. 16. 경기도 제안 불채택  
- 적정임금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 불채택
- '22. 04. 05. 경기도에 2차 공무원 제안  
-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에 대한 불합리성에 따른 개선 제안
- '22. 06. 15. 경기도 제안 채택
- '22. 06. 17. 「특수조건」 세부 운영 사항 변경 실시  
-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관여 우려 사항 삭제 및 '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' 신설

### 개선효과



- 법령 및 기존의 규정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소지를 제거함으로써, 「특수조건」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음.
- 계약체결 시 「특수조건」에 대한 이행 확약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「특수조건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.



## 06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

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☎ 031-8008-4108

### 개선배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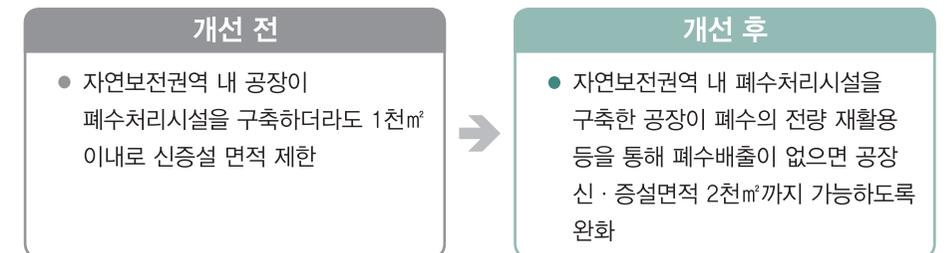
-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㎡ 이내로 제한  
-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신증설 면적 제한 없음(산집법 시행령 별표3)
-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아 취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공장 신증설면적 1천㎡ 이내로 제한  
※ 폐수배출시설 :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

[사 례] 여주시 소재 T사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·위탁처리하고 있지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필요한 만큼의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증설이 가능

### 개선내용



-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이라도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하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신·증설 면적 확대(1천㎡→2천㎡ / 산업통산자원부)  
- 규제개혁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공장 신·증설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를 추진



\*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3] 개정 예정('23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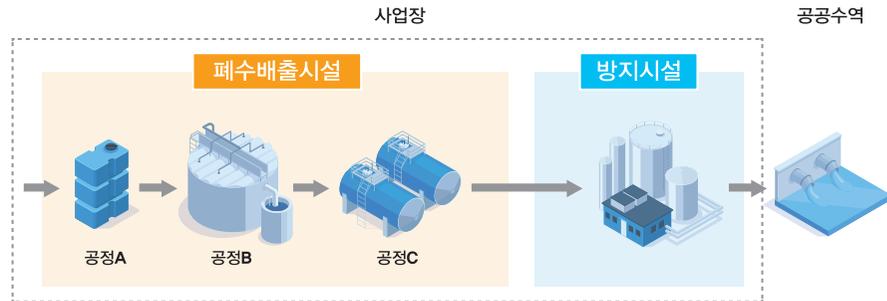
- '20. 08.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·증설 규제 관련 건의(규제개혁신문고)
- '22. 07. 공장 신·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브리핑(산업통상자원부)

### 개선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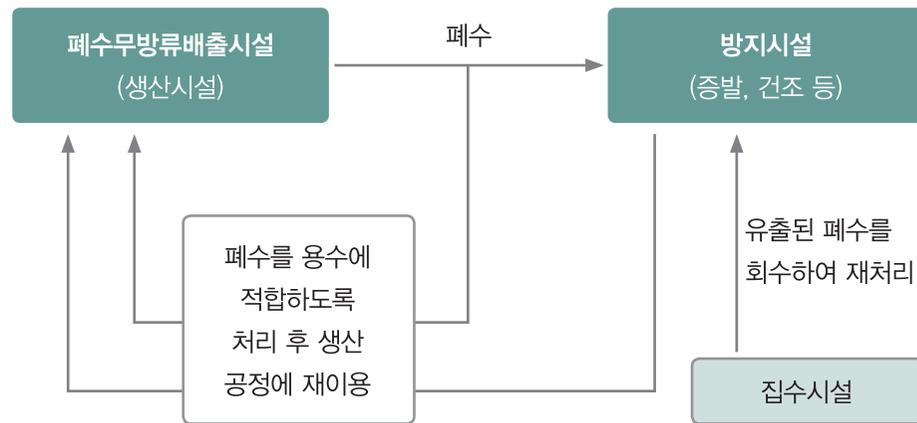


-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 및 경제발전 환경 개선

[ 폐수배출시설의 개념도 ]



[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념도 ]



※ 폐수무방류배출시설 :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

## 07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

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☎ 031-8008-4108

### 개선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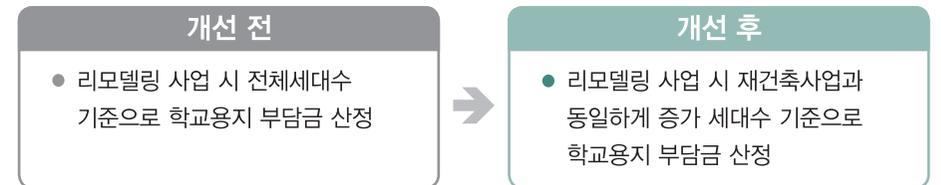


-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을 철거하지 않고, 대수선 및 증축 등을 통해 주거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임
- 리모델링 사업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증가세대수·증축면적기준이 아닌 전체세대수·전체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  
※ 「도시정비법」 및 「소규모 주택정비법」의 재건축사업은 "증가 세대수"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

### 개선내용



-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현재 학교용지법에 따라 전체 세대수로 산정하나,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하는 세대수를 산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건의를 수용함(교육부)



\*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개정 예정('23년)



- '22. 04. 도-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
- '22. 05. 간담회 발췌과제 보완 및 중앙 건의
- '22. 06.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 수용 회신(교육부)

### 개선효과



- 사업성격이 유사한(노후주택 개선)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, 리모델링 사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경제적 비용 절감